

-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43
------------	-----

2018년 12월 19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9월 19일, 정진철 의원 외 17명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1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(2018년 12월 1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정진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예상지역에 관련 법령에 따라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‘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’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새로이 규정함 (안 제2조제7호)
-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8. 10. 5 ~ 2018. 10. 15

-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) : 수정동의

- 제7조의3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)은 동 조례 제10조의 자치구 재정지원 근거와 중복되어 수정 필요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의 용어정의 및 설치·지원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의 용어정의 추가(안 제2조제7호 관련)

- 안 제2조제7호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를 추가하는 것으로 장치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■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의 설치 및 재정지원 관련(안 제7조의3)

- 안 제7조의3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구청장이 동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

현행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서 따르면,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¹⁾하고 있고,

1) 5.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가.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

최근 4년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301건 중 과반수가 넘는 62%²⁾가 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데 반해, 음성안내 보조 장치는 22개 학교, 31개소³⁾ 설치된 것에 불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,

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 설치 및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나.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

2) 최근 4년간(2014~2017)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(보행정책과-8194(2018.7.26))

년도	초등학교 보호구역 (개소)	사상자(건수)				사고유형(건수)				사고원인(건수)			사고위치(건수)		
		소계	사망	중상	경상	횡단 중	차도 통행 중	갈림 자리 구역	보도 통행 중	보행자 보호의무 위반	안전운전 불이행	신호 위반	차도	교차로	횡단 보도
계	301	301	5	111	185	186	18	13	9	118	74	54	110	93	49
2014	87	87	1	36	50	47	2	5	2	37	21	13	8	20	18
2015	74	74	1	24	49	44	6	3	3	26	20	14	32	30	10
2016	78	78	2	28	48	50	7	4	3	29	21	12	35	21	21
2017	62	62	1	23	38	45	3	1	1	26	12	15	35	22	0

3)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운영 현황 [비용추계서 불임2]

- '13년 구남초 주변 4개소 - '15년 용곡초 등 13개 학교 20개소
- '18년 신북초 등 7개 학교 7개소 (12월 예정)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를 다음과 신설한다.

7.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 및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신설한다.

- 제7조의3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)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-----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의3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) ① <u>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② <u>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